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7. 14.

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6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9. 7. 3)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가. 제안이유

-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등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 제2조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
-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함
- 안 제8조, 제9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참고” 란을 “작성요령” 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요령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며,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에 의거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반,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6 호
----------	---------

제출연월일 : 2009.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함(안 제3조)
-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 라.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4. 30 ~ 5. 20)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포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와 동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포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영등포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
상과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제 17조 제 2항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div>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영 등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 17조 제 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 17조 제 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영 등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제 17조 제 4항 관련)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한다
2.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4.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5.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6.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7.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제 17조제 5항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한</u>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u>위임된</u>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u>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u>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u>구청장은 법 제5조제 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p>제5조(투표청구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p>	<p>제5조(투표청구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u>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②청구인대표자는 <u>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수임자는 <u>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u>법 제10조제3항에 따라</u>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② 청구인대표자는 <u>법 제10조제3항에 따라</u>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u>제2항에 따른</u> 수임자는 <u>법 제10조제3항에 따라</u>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제7조(서명요청기간) <u>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서명요청기간은 <u>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p>	<p>제7조(서명요청기간) <u>법 제10조제3항에 따른</u> 서명요청기간은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u>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u>주민등록번호</u>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u>주소나居所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u>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구와 동별로 <u>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u>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u>주민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④구청장은 <u>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u>법 제12조제3항에 따라</u> 구와 동별로 <u>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u>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u>법 제12조제3항에 따라</u>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u>제1항에 따른</u>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 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심의회는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다.</p> <p>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영등포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 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 심의회는 의장이 부구청장이 된다.</p> <p>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영등포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심의회 의 운영) ① 심의회 의 회의 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 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p> <p>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심의회 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 의 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3조(심의회 의 운영) ① 심의회 의 회의 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 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심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 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p> <p>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심의회 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 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 확인, 주 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 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 확인, 주 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 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 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p>	<p>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 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 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u>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u>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u>14일 이내에</u>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u>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u>기간내에</u>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u>당해</u>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u>같은 조 제5항에 따른</u>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u>14일 이내에</u>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12조제7항에 따라</u>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u>기간 내에</u>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u>해당</u>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u>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u>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다.</p>	<p>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u>법 제22조에 따라</u>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u>법 제22조제2항에 따라</u>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다.</p>
<p>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u>의한다</u>.</p>	<p>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u>법 제10조제1항에 따른</u>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u>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한다</u>.</p> <p>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u>의한다</u>.</p> <p>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u>의한다</u>.</p> <p>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u>의한다</u>.</p> <p>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u>의한다</u>.</p>	<p>②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u>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u>따른다</u>.</p> <p>③ <u>제6조제2항에 따른</u>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u>따른다</u>.</p> <p>④ <u>제8조제2항에 따른</u>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u>따른다</u>.</p> <p>⑤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u>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u>따른다</u>.</p> <p>⑥ <u>법 제12조제4항에 따른</u>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u>따른다</u>.</p>
<p>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u>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p>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u>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에 따른</u>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주소 (전화번호 :)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제17조제1항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주소 (전화번호 :)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p> <p>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p> <p>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p>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영 등 포 구 청 장 (인)</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제17조제2항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영 등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p> <p>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p> <p>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p>	

현 행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개 정 안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7조제3항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또는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제17조제5항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u>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u> 2. <u>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 3. <u>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u>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제17조제6항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u>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u> 2. <u>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 3. <u>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u>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